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
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박보균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완료신고 시 출토유구에 대한 보존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조치 이행을 보다 두텁게 담보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문화재 보존조치(발굴조사) 결과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로서 보존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함(별지 제4호서식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 서식 대비표

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

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문화재 보존조치(발굴조사) 결과보고서
(매장문화재 발굴 완료신고서)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허가번호 제 호			매장문화재명		
발굴조사 유형 [] 표본 [] 시굴 [] 정밀발굴			발굴 사유		
매장문화재 소재지			매장문화재 산포지(散布地) 면적 m ²		발굴면적 m ²
발굴조사 기관명			조사단	조사단장	
				책임조사원	
발굴기간 . . . ~ . . .				조 사 원	
				준조사원	
현장조사일 일	발굴 비용 원			보 조 원	
출토유구	종류	시대	수량	중요 유물	비 고
출토유물	종류	시대	수량	중요 유물	비 고
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계획					

위와 같이 발굴을 완료하였기에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항·제12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·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조치(발굴조사) 결과보고서 및 매장문화재 발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 보고자(신고자) 성명 (서명 또는 인)

문화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발굴조사 현황[조사개요, 추진경과, 유구(遺構)・유물 현황을 포함해야 합니다] ※ 표본・시굴조사 시 후속 조사에 필요한 비용 산출의 근거자료 포함(유적분류, 유구밀도, 중층 여부 등) 2. 출토된 매장문화재 목록 및 사진 3. 출토유구에 대한 보존조치 이행계획서[조치 완료기한을 포함해야 합니다] ※ 법 제1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경우에 한함
------	--

신 · 구서식대비표

현행									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별지 제4호서식) 문화재 보존조치(발굴조사) 결과보고서 (매장문화재 발굴 완료신고서) 무 [] 제9호 제2항의 문예 (호를 함다) <table border="1"> <tr> <td>허가번호 제 - 호</td> <td colspan="9">매장문화재명</td> </tr> <tr> <td>발굴조사 유형 [] 표본 [] 시굴 [] 정밀발굴</td> <td colspan="9">발굴 사유</td> </tr> <tr> <td>매장문화재 소재지</td> <td colspan="3">매장문화재 산포지(散布地) 면적 m²</td> <td colspan="6">발굴면적 m²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발굴조사 기관명</td> <td colspan="8" rowspan="4">조사단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발굴기간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현장조사일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발굴 비용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일</td> <td colspan="2">원</td> <td colspan="2">보 조 원</td> <td colspan="4"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출토유구</td> <td>종류</td> <td>시대</td> <td>수량</td> <td>중요 유물</td> <td colspan="5">비 고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 colspan="5"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출토유물</td> <td>종류</td> <td>시대</td> <td>수량</td> <td>중요 유물</td> <td colspan="5">비 고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 colspan="5"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10">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계획</td> <td colspan="10"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10">위와 같이 발굴을 완료하였기에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항·제12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·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조치(발굴조사) 결과보고서 및 매장문화재 발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.</td> <td colspan="10">년 월 일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10">보고자(신고자) 성명</td> <td colspan="10">(서명 또는 인)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10">문화재청장 귀하</td> <td colspan="10"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10"> 첨부서류 1. 발굴조사 현황(조사개요, 추진경과, 유구(遺構)·유물 현황을 포함해야 합니다) ※ 표본·시굴조사 시 후속 조사에 필요한 비용 산출의 근거자료 포함(유적분류, 유구명도, 층층 여부 등) 2. 출토된 매장문화재 목록 및 사진 279a×327b(백장지 45g/㎡) </td> <td colspan="10"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10"> 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별지 제4호서식) 문화재 보존조치(발굴조사) 결과보고서 (매장문화재 발굴 완료신고서) 무 [] 제9호 제2항의 문예 (호를 함다) <table border="1"> <tr> <td>허가번호 제 - 호</td> <td colspan="9">매장문화재명</td> </tr> <tr> <td>발굴조사 유형 [] 표본 [] 시굴 [] 정밀발굴</td> <td colspan="9">발굴 사유</td> </tr> <tr> <td>매장문화재 소재지</td> <td colspan="3">매장문화재 산포지(散布地) 면적 m²</td> <td colspan="6">발굴면적 m²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발굴조사 기관명</td> <td colspan="8" rowspan="4">조사단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발굴기간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현장조사일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발굴 비용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일</td> <td colspan="2">원</td> <td colspan="2">보 조 원</td> <td colspan="4"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출토유구</td> <td>종류</td> <td>시대</td> <td>수량</td> <td>중요 유물</td> <td colspan="5">비 고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 colspan="5"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출토유물</td> <td>종류</td> <td>시대</td> <td>수량</td> <td>중요 유물</td> <td colspan="5">비 고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 colspan="5"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10">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계획</td> <td colspan="10"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10">위와 같이 발굴을 완료하였기에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항·제12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·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조치(발굴조사) 결과보고서 및 매장문화재 발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.</td> <td colspan="10">년 월 일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10">보고자(신고자) 성명</td> <td colspan="10">(서명 또는 인)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10">문화재청장 귀하</td> <td colspan="10"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10"> 첨부서류 1. 발굴조사 현황(조사개요, 추진경과, 유구(遺構)·유물 현황을 포함해야 합니다) ※ 표본·시굴조사 시 후속 조사에 필요한 비용 산출의 근거자료 포함(유적분류, 유구명도, 층층 여부 등) 2. 출토된 매장문화재 목록 및 사진 3. 출토유구에 대한 보존조치 이행계획서(조사 완료기한을 포함해야 합니다) ※ 별 제4호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경우에 한함 450×327b(백장지 45g/㎡) </td> <td colspan="10"></td> </tr> </table></td></tr></table>										허가번호 제 - 호	매장문화재명									발굴조사 유형 [] 표본 [] 시굴 [] 정밀발굴	발굴 사유									매장문화재 소재지	매장문화재 산포지(散布地) 면적 m ²			발굴면적 m ²						발굴조사 기관명		조사단								발굴기간		현장조사일		발굴 비용		일		원		보 조 원						출토유구	종류	시대	수량	중요 유물	비 고														출토유물	종류	시대	수량	중요 유물	비 고														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계획																				위와 같이 발굴을 완료하였기에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항·제12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·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조치(발굴조사) 결과보고서 및 매장문화재 발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.										년 월 일										보고자(신고자) 성명										(서명 또는 인)										문화재청장 귀하																				첨부서류 1. 발굴조사 현황(조사개요, 추진경과, 유구(遺構)·유물 현황을 포함해야 합니다) ※ 표본·시굴조사 시 후속 조사에 필요한 비용 산출의 근거자료 포함(유적분류, 유구명도, 층층 여부 등) 2. 출토된 매장문화재 목록 및 사진 279a×327b(백장지 45g/㎡)																				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별지 제4호서식) 문화재 보존조치(발굴조사) 결과보고서 (매장문화재 발굴 완료신고서) 무 [] 제9호 제2항의 문예 (호를 함다) <table border="1"> <tr> <td>허가번호 제 - 호</td> <td colspan="9">매장문화재명</td> </tr> <tr> <td>발굴조사 유형 [] 표본 [] 시굴 [] 정밀발굴</td> <td colspan="9">발굴 사유</td> </tr> <tr> <td>매장문화재 소재지</td> <td colspan="3">매장문화재 산포지(散布地) 면적 m²</td> <td colspan="6">발굴면적 m²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발굴조사 기관명</td> <td colspan="8" rowspan="4">조사단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발굴기간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현장조사일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발굴 비용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일</td> <td colspan="2">원</td> <td colspan="2">보 조 원</td> <td colspan="4"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출토유구</td> <td>종류</td> <td>시대</td> <td>수량</td> <td>중요 유물</td> <td colspan="5">비 고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 colspan="5"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출토유물</td> <td>종류</td> <td>시대</td> <td>수량</td> <td>중요 유물</td> <td colspan="5">비 고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 colspan="5"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10">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계획</td> <td colspan="10"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10">위와 같이 발굴을 완료하였기에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항·제12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·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조치(발굴조사) 결과보고서 및 매장문화재 발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.</td> <td colspan="10">년 월 일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10">보고자(신고자) 성명</td> <td colspan="10">(서명 또는 인)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10">문화재청장 귀하</td> <td colspan="10"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10"> 첨부서류 1. 발굴조사 현황(조사개요, 추진경과, 유구(遺構)·유물 현황을 포함해야 합니다) ※ 표본·시굴조사 시 후속 조사에 필요한 비용 산출의 근거자료 포함(유적분류, 유구명도, 층층 여부 등) 2. 출토된 매장문화재 목록 및 사진 3. 출토유구에 대한 보존조치 이행계획서(조사 완료기한을 포함해야 합니다) ※ 별 제4호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경우에 한함 450×327b(백장지 45g/㎡) </td> <td colspan="10"></td> </tr> </table>										허가번호 제 - 호	매장문화재명									발굴조사 유형 [] 표본 [] 시굴 [] 정밀발굴	발굴 사유									매장문화재 소재지	매장문화재 산포지(散布地) 면적 m ²			발굴면적 m ²						발굴조사 기관명		조사단								발굴기간		현장조사일		발굴 비용		일		원		보 조 원						출토유구	종류	시대	수량	중요 유물	비 고														출토유물	종류	시대	수량	중요 유물	비 고														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계획																				위와 같이 발굴을 완료하였기에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항·제12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·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조치(발굴조사) 결과보고서 및 매장문화재 발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.										년 월 일										보고자(신고자) 성명										(서명 또는 인)										문화재청장 귀하																				첨부서류 1. 발굴조사 현황(조사개요, 추진경과, 유구(遺構)·유물 현황을 포함해야 합니다) ※ 표본·시굴조사 시 후속 조사에 필요한 비용 산출의 근거자료 포함(유적분류, 유구명도, 층층 여부 등) 2. 출토된 매장문화재 목록 및 사진 3. 출토유구에 대한 보존조치 이행계획서(조사 완료기한을 포함해야 합니다) ※ 별 제4호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경우에 한함 450×327b(백장지 45g/㎡)																			
허가번호 제 - 호	매장문화재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발굴조사 유형 [] 표본 [] 시굴 [] 정밀발굴	발굴 사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매장문화재 소재지	매장문화재 산포지(散布地) 면적 m ²			발굴면적 m ²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발굴조사 기관명		조사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발굴기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현장조사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발굴 비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		원		보 조 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출토유구	종류	시대	수량	중요 유물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출토유물	종류	시대	수량	중요 유물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계획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위와 같이 발굴을 완료하였기에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항·제12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·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조치(발굴조사) 결과보고서 및 매장문화재 발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.										년 월 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보고자(신고자) 성명										(서명 또는 인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문화재청장 귀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첨부서류 1. 발굴조사 현황(조사개요, 추진경과, 유구(遺構)·유물 현황을 포함해야 합니다) ※ 표본·시굴조사 시 후속 조사에 필요한 비용 산출의 근거자료 포함(유적분류, 유구명도, 층층 여부 등) 2. 출토된 매장문화재 목록 및 사진 279a×327b(백장지 45g/㎡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별지 제4호서식) 문화재 보존조치(발굴조사) 결과보고서 (매장문화재 발굴 완료신고서) 무 [] 제9호 제2항의 문예 (호를 함다) <table border="1"> <tr> <td>허가번호 제 - 호</td> <td colspan="9">매장문화재명</td> </tr> <tr> <td>발굴조사 유형 [] 표본 [] 시굴 [] 정밀발굴</td> <td colspan="9">발굴 사유</td> </tr> <tr> <td>매장문화재 소재지</td> <td colspan="3">매장문화재 산포지(散布地) 면적 m²</td> <td colspan="6">발굴면적 m²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발굴조사 기관명</td> <td colspan="8" rowspan="4">조사단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발굴기간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현장조사일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발굴 비용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일</td> <td colspan="2">원</td> <td colspan="2">보 조 원</td> <td colspan="4"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출토유구</td> <td>종류</td> <td>시대</td> <td>수량</td> <td>중요 유물</td> <td colspan="5">비 고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 colspan="5"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출토유물</td> <td>종류</td> <td>시대</td> <td>수량</td> <td>중요 유물</td> <td colspan="5">비 고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 colspan="5"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10">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계획</td> <td colspan="10"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10">위와 같이 발굴을 완료하였기에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항·제12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·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조치(발굴조사) 결과보고서 및 매장문화재 발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.</td> <td colspan="10">년 월 일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10">보고자(신고자) 성명</td> <td colspan="10">(서명 또는 인)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10">문화재청장 귀하</td> <td colspan="10"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10"> 첨부서류 1. 발굴조사 현황(조사개요, 추진경과, 유구(遺構)·유물 현황을 포함해야 합니다) ※ 표본·시굴조사 시 후속 조사에 필요한 비용 산출의 근거자료 포함(유적분류, 유구명도, 층층 여부 등) 2. 출토된 매장문화재 목록 및 사진 3. 출토유구에 대한 보존조치 이행계획서(조사 완료기한을 포함해야 합니다) ※ 별 제4호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경우에 한함 450×327b(백장지 45g/㎡) </td> <td colspan="10"></td> </tr> </table>										허가번호 제 - 호	매장문화재명									발굴조사 유형 [] 표본 [] 시굴 [] 정밀발굴	발굴 사유									매장문화재 소재지	매장문화재 산포지(散布地) 면적 m ²			발굴면적 m ²						발굴조사 기관명		조사단								발굴기간		현장조사일		발굴 비용		일		원		보 조 원						출토유구	종류	시대	수량	중요 유물	비 고														출토유물	종류	시대	수량	중요 유물	비 고														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계획																				위와 같이 발굴을 완료하였기에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항·제12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·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조치(발굴조사) 결과보고서 및 매장문화재 발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.										년 월 일										보고자(신고자) 성명										(서명 또는 인)										문화재청장 귀하																				첨부서류 1. 발굴조사 현황(조사개요, 추진경과, 유구(遺構)·유물 현황을 포함해야 합니다) ※ 표본·시굴조사 시 후속 조사에 필요한 비용 산출의 근거자료 포함(유적분류, 유구명도, 층층 여부 등) 2. 출토된 매장문화재 목록 및 사진 3. 출토유구에 대한 보존조치 이행계획서(조사 완료기한을 포함해야 합니다) ※ 별 제4호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경우에 한함 450×327b(백장지 45g/㎡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허가번호 제 - 호	매장문화재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발굴조사 유형 [] 표본 [] 시굴 [] 정밀발굴	발굴 사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매장문화재 소재지	매장문화재 산포지(散布地) 면적 m ²			발굴면적 m ²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발굴조사 기관명		조사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발굴기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현장조사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발굴 비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		원		보 조 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출토유구	종류	시대	수량	중요 유물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출토유물	종류	시대	수량	중요 유물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계획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위와 같이 발굴을 완료하였기에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항·제12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·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조치(발굴조사) 결과보고서 및 매장문화재 발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.										년 월 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보고자(신고자) 성명										(서명 또는 인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문화재청장 귀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첨부서류 1. 발굴조사 현황(조사개요, 추진경과, 유구(遺構)·유물 현황을 포함해야 합니다) ※ 표본·시굴조사 시 후속 조사에 필요한 비용 산출의 근거자료 포함(유적분류, 유구명도, 층층 여부 등) 2. 출토된 매장문화재 목록 및 사진 3. 출토유구에 대한 보존조치 이행계획서(조사 완료기한을 포함해야 합니다) ※ 별 제4호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경우에 한함 450×327b(백장지 45g/㎡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